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이상호 의원 외 19인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의자: 이상호 · 강승수 · 김민성 ·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이명희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의원(20인)

## 1. 제안이유

상위법 「근로복지기본법」 상 위탁 근거 문구를 일치시키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기 규정한 수탁자의 책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취소·해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적 실익을 찾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운영위탁’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5조)
- 나. 제7조(수탁자의 의무) 조문 삭제
- 다. 제9조(감독) 조문 삭제
- 라.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조문 삭제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2)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6조, 제21조

나. 부서검토: 노동복지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기 타: 없음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를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u>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u>관리·운영</u>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생략)</p> <p>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u>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u></p> <p>② 수탁자는 세탁소에 시설을 <u>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u></p>	<p>제5조(운영의 위탁) ① -----          --- <u>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단체</u>-----          -----          ----- <u>운영을</u> -----          -----.</p> <p>② -----          ----- <u>운영</u>-----          -----          -----.</p> <p>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그 밖에 구미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생략)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삭제>

<삭제>

<p><u>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u></p> <p><u>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u></p> <p><u>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제11조 · 제12조 (생략)</u></p>	<p><u>제8조 · 제9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u></p>
---	--

## 관계법령

### □ 「근로복지기본법」

-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 증

·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노동복지과

조 례 명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li><li>▪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6조, 제21조</li></ul></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로복지기본법」 상 위탁 근거 문구 일치(안 제5조) (당초) 비영리법인·단체 → (변경) 비영리단체</li><li>○ 관련 조례에 기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7조, 제9조, 제10조)</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위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운영위탁의 대상을 비영리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li><li>○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중복·유사조항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li></ul>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 상위법 합치 및 중복·유사 규정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 및 실익 도모</li><li>○ 소요예산 : 해당없음</li><li>○ 문 제 점 : 해당없음</li></ul>	

[별지 제2호서식]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운영지원 등)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세출, 세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 4. 작성자

- 노동복지과 행정8급 이인호(054-480-6204)